금융투자업규정

<목 차>

- 1. 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
- 2. 거래정보의 보고
- 3.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등
- 4. 거래정보의 제공 및 공시

금융위원회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거래정보저장소의	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 등						
	2.규제조문	제5-50조의2							
기본 정보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기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2항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	5.입법예고 '18.7		6~'18.9.4.			
	6.검증단계	규제연구센터 검증	구제연구센터 검증 전						
	7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□ '09년 G20 정성 □ 시장인프라기관							
규제의	8.규제내용		당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수집,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래 정보저장소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규정						
540	9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□ (피규제집단) 거래정보저장소 □ (이해관계자) 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							
	10.기대효과	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,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							
			비용	편 9	1	순비용			
7 71 01	11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피규제자	33,324.34	0		33,324.34			
규제의 적정성	(= : : = = ;	피규제자 이외	0	0		0			
700	12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기	중기	중기영향평가		경쟁영향평가			
	여부	해당없음	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
	13.일 몰 설 정 여부	해당없음							
기타	14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					
	15.비용관리제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	!간균등순비용			
	(단위:백만원)	적용	33,324.34	0		4,664.22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-50조의2(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) ①
	금융위원회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
	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
	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
	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
	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
	보를 수집·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(이하
	"거래정보저장소"라 한다)을 지정하여
	야 한다.
	1.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
	수집·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
	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
	비를 갖출 것
	2.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
	것
	3. 이해상충방지, 정보보호 및 천재지
	변,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
	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
	갖출 것
	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다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
	다.
	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
	을 받은 경우
	2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
	하는 경우
	3.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
	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
	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추진배경)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, 시스테믹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관련 거래정보의 보고 의무화에 합의('09년)
 - G20 합의사항 이행 및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거래정보저장소(이하 TR*)의 도입 필요
 - * Trade Repository(TR, 거래정보저장소):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는 중앙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
- (개입 필요성) 새로운 시장인프라기관인 **TR의 설립·운영**에 관한 정부의 **효과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**
 - 현행 보고체계로는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 전반의 리스크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이 곤란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	대안명	거래정보저장소 지정
규제대안1	내용	□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수집,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래정보저장소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규정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감원, 한국은행	- TR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(실무협 의회 운영)	TR 도입근거 반영
금융투자업자 등	-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	예고 이전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(대안의 내용)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수집·보관·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기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TR로 지정하고,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지정 취소
- (선택근거) 장외파생상품시장 전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TR 지정규제 도입은 타당

3. 기대 효과

○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**금융시장 안정성**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
- (규제수단) 금융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후 처리비용을 감안하였을 때, 사전 규제 마련이 합리적
 -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TR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적·물적 자원 확보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요건으로 규정
 -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자자 이익저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TR 건전성 유지 도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	시장유인적	국제기준	일몰설정	원칙허용·
기술	경쟁	중기	규제설계	정합성	여부	예외금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0	해당없음	해당없음

- o 영향평가
 -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
 - **경쟁영향평가** 해당 없음
 - **중기영향평가** 해당 없음
- o 기타 고려사항
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
 - 국제 기준 정합성

국제기준(PFMI*)은 감독당국이 TR 등의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·감독·감시를 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충분한 권한을 보유해야 함을 권고

- * PFMI(Principle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) : 지급결제위원회(CPMI) 및 국제 증권감독기구(IOSCO)가 발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위험관리·감독 기준('13.4월)
- **일몰설정 여부** 해당 없음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 해당 없음
-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- o 해외사례
 - 미국·유럽·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국제기준(PFMI)에 부합하는

TR 관련 규제체계를 도입·운영 중

- 주요국들은 **자본시장과 관련한 법 등에** TR에 대한 **규제체계를** 마련하고 있고, 등록·지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규정

<주요 국가별 TR 규정 현황>

국가	도입시기	근거 규정	규제 방식
미국	′10. 7월	Dodd-Frank법, 상품거래법(CEA)	등록
유럽	'12. 7월	유럽시장인프라 규제법(EMIR)	등록
일본	'10. 5월	금융상품거래법	지정

o 타법사례

-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, 외국환거래규정 제10-14조

4. 비용편익 분석

국민

정부

총 합계

기업순비용

<규제대안 1: 거래정보저장소 지정>

① 비용편익분석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33.324.34백만

가격기준연도		년재가치 분석대 <i>(</i> 준연도 (년			할인율(%)		단위	
2018		2018 10		0	5.5		백만원, 현재가치	
규제대안 1 : 2	거래정	보저장소 지	정					
영향집단	=	비용			편익		순비용	
피규제 기업	직접	33,324.34					33,324.34	
· 소상공인	간접							
피규제 일반	국민	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								
· 소상공인								
피규제자 이외	일반							

33,324.34

4,664.22

33.324.34 연간균등순비용

33,324.34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 - 지정대상 요건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안정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**피규제자가 준수 가능**하고,
 -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정 취소근거 역시 충족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, 준수 가능성이 높음
- o 규제 차등화 방안
 - 해당 없음
-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- o 행정적 집행가능성
 - **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2항 위임근거**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을 제도화
- o 재정적 집행가능성
 - 해당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- 1. 추진 경과
 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이 관련 실무협의회를 운영(~'16.8월)
 - 금감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'18.3.30일)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금융감독원 **검사를 통해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**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책 등을 검토

3. 종합결론

○ 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므로, 규제 도입이 타당

별 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기업순비용

가격기준연도		년재가치 준연도	분석대 (년		할인율(%		단위
2018	2018		10		5.5	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:							
영향집단	-	비용	<u> </u>		편익		순비용
피규제 기업	직접	3	3,324.34				33,324.34
· 소상공인	간접						
피규제 일반	국민						
피규제자 이외	기업						
· 소상공연	<u> </u>						
피규제자 이외	일반						
국민							
정부							
총 합계		3	3,324.34				33,324.34

33,324.34 연간균등순비용

4,664.22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거래정보저장소 지정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 :

업무제목	거래정보저장소의 시스템 구축
설명	거래정보저장소 운영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
세분류	거래정보저장소 운영기관(한국거래소)
활동제목	시스템 구축 비용
비용항목	설비
비용	9,880,000,000
활동비용 특성	일시적
산식	설비비용 [구매비용(원)(988000000) X 연간 구매 횟수(1) X 피규제자 수(1)]
근거설명	설비(구매)비용* 시스템개발비[3,560,000,000]+소프트웨어[2,460,000,000]+서버 및 스토리지[1,190,000,000]+네트워크 및 보안[2,120,000,000]+외부감리[200,000,000]+PMO[350,000,000] *제도안을 근거로 개발업체가 제시한 평균 가격

세분류	거래정보저장소 운영기관(한국거래소)
활동제목	거래정보저장소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
비용항목	행정부담
비용	23,444,343,947
활동비용 특성	반복적/연간균등
산식	인건비용 [연간 투입인원(10) X 연간 투입시간(2000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44908) X 피규제자 수(1)] 인건비 외 물적비용 [가격(2050000000) X 연간 발생 횟수(1) X 피규제자 수(1)]
근거설명	ㅇ 인건비용 = [10명(투입인원)×[8시간(1일당 투입시간)×250일(연간 영

업일수)]×44,908원(시간당 근로임금)] = 898,160,000원

- 투입인원: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초기 인원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사례를 참조하여 10명으로 가정
- 투입시간: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
- 시간당 근로임금: '17년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기준 국내 증권사(20사) 및 은행(12사)의 평균연봉(89,815,188원)을 하루 8시간, 250일 근무 기준으로 산출(44,908원)

O 유지보수비 = [AP 및 인프라 운영인력 연간 계약금액(1.5억원)×운영인원(8명) + 소프트웨어 유지보수(4.6억원) + 장비유지보수(2.6억원) + 인터넷 회선(1.3억원)] = 2,050,000,000원

- 유지보수 인력 인건비는 업계의 통상적인 AP 및 인프라 운영계약금액인 1인당 연간 1.5억원으로 추정
- 유지보수인력은 AP 6명, 인프라 2명으로 가정
-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도입가의 10%,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도입가의 15% 적용

② 정부:

(정성)제목	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
분석	정부는 TR이 수집하는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가격정보, 포지션 정보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가격움직임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거래 인식 가능
근거설명	TR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건별 거래당사자정보, 상품정보, 가격정보, 포지션 정보 등을 감독당국에 제공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거래정보의 보고	거래정보의 보고						
기본	2.규제조문	제5-50조의3							
정보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2항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8.7.26 [~] '18.9.4.					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							
규제의	7.규제내용	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의무화							
宣	8. 피규제집단	□ (피규제집단) 금융투자업자(154개)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(1개) * '17년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있는 금투업자의 수(금감원 통계)							
	및 이해관계자	· 17년을 기간 공회회공공은 기대를 다이 쓰는 음구합시기 구(음음간 공계) □ (이해관계자)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							
	9.기대효과	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테믹리스크 관리 강화							
	10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
규제의	여부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
적정성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므로, 규제 도입이 타당							
	12.일 몰 설 정 여부	해당없음							
기타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-50조의3(거래정보의 보고) ① 금융
	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
	다. 이하 같다)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
	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
	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
	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거
	래정보"라 한다)를 거래정보저장소에
	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집합투자업자
	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
	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
	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
	고하여야 한다.
	1.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(거래당사자
	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)
	2. 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
	한 정보(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
	다)
	3.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
	4.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
	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
	②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
	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
	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
	야 한다.
	1. 금융투자업자 : 거래일의 그 다음 영
	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
	는 시간(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
	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
	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

현 행	개 정 안
<u>ස පි</u>	개 성 원 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)
	2.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: 금융투
	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
	정(이하 "청산업무규정"이라 한다)
	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
	에 따다 제구구요 중국에 원교된 날의 당일
	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
	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
	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보고 업
	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
	에 따른 보고 업무에 관한 책임을 면
	하지 못한다.
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
	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
	한다.
	1.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
	2. 동일 법인 내 거래(외국 금융투자업
	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
	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)
	3.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
	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
	정하는 시한 이전에 청산업무규정에
	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
	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
	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.
	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
	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, 보고 시한
	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	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추진배경) '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시스테믹리스크 완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TR 보고 의무화에 합의
- (개입필요성) 현재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보고체계^{*}로는 금융 당국이 시장 전반의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움
 - * 거래정보 수집기관이 분산되어 있고, 수집기관별로 보고대상 상품 및 보고의무자 범위 등이 상이
 - 시장참가자에게 거래정보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**보고**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 개입이 불가피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-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 - (대안의 내용)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참여자들(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*)에게 TR로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
 - * 집합투자기구가 명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운용주체인 집합투자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
 - ●(보고항목) 거래당사자, 계약조건, 가치평가 및 담보에 관한 정보로서 세부 항목은 TR이 정하도록 위임
 - ^❷(보고시한) 거래정보의 시의성을 우선 고려하되, 보고의무자의 업무절차 등을 감안하여 결정^{*}
 - * 금융투자업자(T+1일)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(T일)
 - ❸(보고업무의 위탁) 보고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보고의무자를 위하여 보고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, 동 책임(기한 준수, 정보 정확성 등)은 原 보고의무자에 있음을 명시
 - ●(보고의무 면제 등) 특정 정책 목적(例. 한국은행이 당사자인 거래)

이나 **보고의무 경감**(例. 동일법인 내 거래, CCP 청산거래)을 위해 보고 의무를 면제하거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가주

- (보고방법 등) 거래정보 보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고항목, 보고시한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TR이 정하도록 규정
- (선택 근거) 장외파생상품 시장 전체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에게 거래정보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합리적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감원, 한국은행	- TR 보고의무 신설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 토(실무협의회 운영)	TR 보고의무 반영
금융투자업자 등	-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	예고 이전

3. 기대 효과

-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선제적인 위기대응 능력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
 - 또한, TR정보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목적으로도 활용 가능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
- (규제수단) 시스테믹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후 처리비용의 감안시, 사전 규제 마련이 합리적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	시장유인적	국제기준	일몰설정	원칙허용·
기술	경쟁	중기	규제설계	정합성	여부	예외금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0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
- **경쟁영향평가** 해당 없음
- **중기영향평가** 해당 없음
- o 기타 고려사항
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
 -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
 - **일몰설정 여부** 해당 없음
 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 해당 없음
-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- o 해외사례
 - (보고대상 · 보고의무자) 미국·EU 등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장외

파생상품을 보고대상으로 하며, 금융회사와 중앙청산소(CCP)를 보고의무자로 포섭

<주요 국가별 TR 보고대상 및 보고의무자 현황>

	구분	미국	EU	일본	홍콩
보고	자ᄗᆔᄱᆚᅩᄑ	,	/	/	,
대상	장외파생상품	V	V	√	V
상품	장내파생상품	_	$\sqrt{}$	_	_
	금융회사				
보고	CCP				
의무자	비금융회사			_	_
	개인			_	_

- (보고항목) 국제기구(FSB, CPMI-IOSCO)의 보고항목 표준화지침 및 주요국 사례의 경우 대부분 거래당사자, 계약조건, 가치평가 및 담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항목으로 설정

<주요 국가별 TR 보고항목 현황>

구분	국제기준	미국	EU	일본	홍콩
거래당사자정보	\checkmark	$\sqrt{}$	$\sqrt{}$		$\sqrt{}$
계약조건 정보					√
가치평가 정보				_	
담보 정보				_	_

- (보고시한) 해외 주요국에서는 주로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 (T+1일) 또는 그 다음 다음 영업일(T+2일) 내에 거래정보를 보고

<주요 국가별 TR 보고시한 현황>

미국	EU	일본	홍콩
실시간 ~ T+1일*	T+1일	T+2일	T+2일

- * 보고의무자 및 보고대상 정보의 종류별로 다름
- (보고의무 면제) 미국, 일본 등은 정부·중앙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, 대부분 국가는 동일법인 내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면제

o 타법사례

-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,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 - 보고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등 피규제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, 피규제자의 재정현황·기술력 등을 고려했을 때, 준수 가능성이 높음
- o 규제 차등화 방안
 -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일괄 적용
-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- o 행정적 집행가능성
 -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2항 위임근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제도화
-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- 1. 추진 경과
 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이 관련 실무협의회를 운영(~'16.8월)
 - 금감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('18.3.30일)
- 2. 향후 평가계획
 - 금융감독원 **검사를 통해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**하고 이행사항이 **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책 등을 검토**
- 3. 종합결론
 - 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**사회적 편익**이 더 크므로, **규제 도입이 타당**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거래정보저장소의 업	무 등				
기본	2.규제조문	제5-50조의4					
정보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2항					
	4.유형	신설 5.입법예고 '18.7.26~'18.9.4.					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□ '09년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및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 □ 시장인프라기관인 TR 업무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관리·감독이 필요					
규제의	7.규제내용	거래정보저장소가 거래정보의 수집, 보관,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업무규정으로 정하고, 이를 제·개정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					
240	8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□ (피규제집단) 거래정보저장소 □ (이해관계자) 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					
	9.기대효과	거래정보저장소 고유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도모					
	10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
규제의	여부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
적정성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므로, 규제 도입이 타당					
	12.일 몰설 정 여부	해당없음					
기타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-50조의4(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등)
	①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
	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(이하 "거
	래정보저장업무"라 한다)에 필요한 세
	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
	며,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
	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
	한다.
	②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저장업
	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
	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
	1.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가 세부
	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업무
	2.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
	받은 업무
	③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저장업
	무 및 제2항의 부수업무 외에 다른 업
	무를 겸영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그
	다른 업무와 거래정보저장업무 및 제2
	항의 부수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
	야 한다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추진배경) TR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민감한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정부 규율이 필요
- (개입 필요성) 새로운 시장인프라기관인 TR의 운영에 관한 효과 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하여 관련 규제 도입
 - 시장인프라로서 TR이 고유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위한 **부수업무** 범위 제한 및 겸영업무 영위 시 이해상충 최소화 등에 관한 관리·감독 근거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대안의 내용) 다른 시장인프라 기관과 같이 TR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하고, 이를 제·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
- 아울러, TR의 부수업무 범위를 명시하고, 다른 겸영업무 영위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제
- (선택 근거) 업무에 대한 세부적·기술적 사항은 TR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제는 합리적*
 - * 다른 FMI(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) 대상인 한은금융망(지급결제시스템)도 「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규정**」에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 중
 - ** 한은법 §28, §62, §81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통위규정으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(대통령령)상 훈령·예규·고시로 취급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감원, 한국은행	- 거래정보 저장소의 업무에 관한 내용 반영 (실무협의회 운영)	세부 업무규정 반영
금융투자업자 등	-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	예고 이전

3. 기대 효과

○ TR 고유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운영의 안정성 도모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
- (규제수단) 금융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후 처리비용을 감안하였을 때, 사전 규제가 합리적
 - TR의 보고 부담 가중, 다른 겸영업무와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**적절한 규제수단 확보가 필요**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	시장유인적	국제기준	일몰설정	원칙허용·
기술	경쟁	중기	규제설계	정합성	여부	예외금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0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 없음

- o 기타 고려사항
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
 - 국제 기준 정합성

국제기준(PFMI)에서는 다른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 거래정보저장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, 이 경우 업무간 이해상 충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권고

- **일몰설정 여부** 해당 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 해당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- (업무규정) 국제기준(PFMI)에서는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령과 정합성 있는 업무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, 해외 주요국 들은 주로 업무규정을 TR이 제정하도록 규정

< 주요 국가별 TR 업무규정 입법례 >

국제기준(PFMI)	미국	EU	일본
·FMI는 명확하고, 이해 하기 쉬우며 관련 법 령과 정합성 있는 규정, 절차 및 계약을 갖추 어야 함(원칙 1.2)	·TR은 감독당국(CFTC)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핵심원칙(설립요건) 준수방식에 관한 재량 권을 가짐	·TR은 법률(EMIR)과 관련된 조항의 준수 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	·TR은 업무규정의 제정 · 변경시 내각 총리대신인가를 받 아야 함

- (업무수행 범위)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국제기준(PFMI)에서는 다른 금융시장 인프라기관이 TR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조치 마련을 요구

< 주요 국가별 TR의 겸업 관련 규정 >

국제기준(PFMI)	미국	EU	일본
·다른 FMI의 TR 겸영 가능 - 이해상충 방지조치 필요	·일반회사 뿐 아니라 파생상품청산기구 (CCP)도 TR 등록가능	수행시 고유기능과	·TR의 부수업무 외 겸업 제한 - 내각 총리대신 승인시 가능

o 타법사례

해당 없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 -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안정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**피규제자가 준수 가능함**
-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 없음
-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- o 행정적 집행가능성
 -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2항 위임근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 도입을 제도화
- o 재정적 집행가능성

해당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- 1. 추진 경과
 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이 관련 실무협의회를 운영(~'16.8월)

○ 금감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('18.3.30일)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금융감독원 **검사를 통해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**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책 등을 검토

3. 종합결론

○ 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**사회적 편익**이 더 크므로, **규제 도입이 타당**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거래정보의 제공 및 공시				
기본 정보	2.규제조문	제5-50조의5		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2항				
	4.유형	신설 5.입법예고		'18.7.26 [~] '18.9.4.		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□ '09년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및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 □ 거래정보저장소가 수집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이 수집하고,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				
규제의 필요성	7.규제내용	거래정보저장소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,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				
	8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□ (피규제집단) 거래정보저장소 □ (이해관계자) 금융투자업자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				
	9.기대효과	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테믹리스크 관리 강화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므로, 규제 도입이 타당				
	12.일 몰설 정 여부	해당없음				
기타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-50조의5(거래정보의 제공·공시) ①
	거래정보저장소는 제5-50조의3제1항
	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
	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	1. 금융위원회
	2. 금융감독원
	3. 한국은행
	4. 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
	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
	기관
	5.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
	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
	은 자
	②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와 관련
	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
	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
	제공·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
	 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(추진배경) TR 도입목적인 장외파생상품시장 시스테믹리스크 예방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,
 - TR이 수집한 거래정보를 감독당국이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, 주요 통계정보 등이 대중에 공개될 필요
- (정부개입 필요성) 금융당국이 TR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와 TR 통계정보 공시 의무화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규제대안) TR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, 한국은행, 기타 금융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고, 주요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제
- (선택근거) 거래정보 제공 및 공시의무는 TR 도입목적에 부합 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감원, 한국은행	-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 및 공시의 무 반영(실무협의회 운영)	제공의무, 공시의무 반영
금융투자업자 등	- 규정개정 예고로 의견수렴 예정	예고 이전

3. 기대 효과

○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아 시스테믹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, TR로 하여금 주요 통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제고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테믹리스크 관리 강화
- (규제수단)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TR이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	시장유인적	국제기준	일몰설정	원칙허용·
기술	경쟁	중기	규제설계	정합성	여부	예외금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0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

-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

- **중기영향평가** 해당 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

- 국제 기준 정합성

국제기준(PFMI)에서는 TR에 대해 감독당국 및 일반대중에게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권고 - 일몰설정 여부

해당 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 해당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- o 해외사례
 -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TR의 감독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거래정보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
< 해외 주요국 TR의 거래정보 제공 및 공시의무 >

구분	국제기준	미국	EU	일본
거래정보제공	0	0	0	0
거래정보공시	0	0	0	0

o 타법사례

해당 없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 - TR은 금융시장 인프라 기관으로서 충분한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춘 자이므로 거래정보 제공·공시의무를 부여하더라도 **규제 준수에** 어려움이 없을 것
- o 규제 차등화 방안

해당 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2항 위임근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금융당국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고, 주요 통계 정보를 일반에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해당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이 관련 실무협의회를 운영(~'16.8월)
- 금감원,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('18.3.30일)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금융감독원 **검사를 통해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**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책 등을 검토

3. 종합결론

○ 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이며, 규제비용에 비해 **사회적 편익**이 더 크므로, **규제 도입이 타당**